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0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06561 배당이의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피 고	1. 대한민국
	2. ○○시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3.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66,487,370원과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17,351,900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5,334,621원을 379,173,891원으로 경정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06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21. 7. 1. D로부터 ○○시 E건물 제1층 F호를 매수하여 2021. 7.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이전 당일 D가 2020. 2. 4. ○○○○은행 앞으로 설정해 준 채권최고액 55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종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해지하고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4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2022.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매각 절차 진행 후 2024. 3. 19. 배당기일에서 2순위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세무서)에 166,487,370원이, 교부권자로서 피고 ○○시에 17,351,900원이,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최후순위로 잔액 195,334,621원이 각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고 한다)되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위 E건물 F호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 대출을 받고자 D가 설정한 종전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고 원고 앞으로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조세채권과의 선후 기준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아닌 종전 근저당권의 설정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지방세 및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에는 체납사실의 기재도 없었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06

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 대한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해당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542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종전 근저당권과는 그 설정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호 동일성이 유지된 채 승계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을가호증 및 을나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20년 사업연도(2020. 1. 1.부터 2020. 12. 31. 까지)의 법인세에 대하여 2021. 3. 31.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납부기한을 2021. 10. 31.로 한 137,526,448원의 납부고지에 대하여 2021. 11. 1. 이후 체납이 발생한 사실, 피고 ○○시는 법정기일을 2021. 4. 20.부터 2021. 7. 8.까지로 한 각 법인소득세 총 17,351,900원의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06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들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우선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와 다른 논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사실이 없다는 납세증명서 내용을 신뢰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의 교부청구가 신의칙 위반 등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어(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